

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전부개정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전부개정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임영은의원 등 7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1년 10월 29일
- 회부일자 : 2021년 11월 1일

3. 제안이유

- 시민사회를 공익활동의 주체로 인식하고 시민사회조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이를 통해 도내 사회문제 해결 및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“시민사회”에 대한 정의(안 제2조)
-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(안 제6조 및 제7조)
-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사항(안 제9조~제11조)
- 시민사회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~제18조)
- 시민사회지원센터에 관한 사항(안 제19조~제22조)

5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「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)이 제정됨에 따라 시민사회의 활성화 및 공익활동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도내 사회문제에 대응하는데 있어 상호협력 및 공공의 이익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,
- 기존의 「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공익활동 자체를 지원대상으로 국한하여 활동을 중심으로 장소제공, 행정지원, 협약체결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시민사회 활성화를 포함한 상위법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.

- 주요내용은
 -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 개정의 목적, 정의, 도민의 권리와 의무, 도지사의 책무,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,
 -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‘기본계획’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고, ‘시행계획’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하였으며, 시장·군수에게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토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내용과 재정적 지원사항을,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및 전담부서 지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,
 - 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는 충청북도 시민사회위원회의 설치,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

- 위원수 20명 이내 구성, 임기 2년(1회 연임),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·해촉, 정기회의(연2회), 분과위원회 설치운영
-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는 충청북도 시민사회지원센터의 설치, 기능과 위탁운영 근거를 규정하였음.

○ 이 조례개정안은

충청북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도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의 지원 및 보장으로 민·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,

- 일반적으로 시민사회는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로만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, 도민 등이 주체로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제도화 하는 것은 사회 전반에 걸친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되고,
-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민·관 협치의 전제 하에 다양한 시민사회 주체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숙의과정이 이행되고 시민사회에 대한 존중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.

붙임: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. 끝.